

의안번호	2200839
의 퇴 인	정점식의원
회 답 일	2024. 7. 11.
추 계 번호	24B1240

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해양공간에서 해양 신·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2,800만원, 2030년 3억 4,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억 9,800만원(연평균 2억 6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신·재생에너지 설치 가능지역에 대한 관 리계획의 수립(안 제7조의2 신설)	해양수산부	26	26	27	—	—	79	16
	시·도	102	212	218	338	349	1,219	244
추가재정소요		128	238	246	338	349	1,298	260

주: 관리계획 수립기간은 해양수산부 2025~2027년(3년간), 시·도(11개) 2025~2029년(5년간)으로 가정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2 신설 (신·재생에너지 설 치가능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)	해양수산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해양공간에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,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(이하 “ <u>해양 신·재생에너지 설비</u> ”라 함)가 <u>설치될 수 있는 지역</u> 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<u>해양 신·재생 에너지 설비의 종류·위치·규모 등을 포함하여야 함(제2항)</u>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추계여부
1	안 제7조의2 신설(신·재생에너지 설치가능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)	○	•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⁾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신·재생에너지 설치가능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(안 제7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해양공간에서 해양 신·재생에너지 설비²⁾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개정안에 따라 해양 신·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은 현행법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

	(2024.4. 기준, 단위: %)						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명목임금상승률	2.9	3.4	3.2	3.2	3.2	3.2	3.1

2) [참고자료 1]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절차 및 [참고자료 2] 공유수면에서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해상풍력 발전단지) 허가 및 설치 현황 참고

제7조³⁾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·도지사(11개)⁴⁾가 수립하는 「해양공간관리계획」에 따른 해양 구분을 준용함

[표 2]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수립 주체에 따른 대상 구역 및 면적

소관	대상 구역	전체 면적	비고
해양수산부	배타적경제수역(EEZ)과 대륙붕 및 항만구역	약 144,182km ² (EEZ)	EEZ의 총 면적은 협정수역(한일 중간수역,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)을 제외
시·도(11개)	영해	약 86,000km ²	영해한계선 내측 수역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해양신재생에너지설비 관리계획 수립비용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관리계획 수립 면적에 면적당 수립단가 및 효율을 곱하여 산출

- (연도별 계획수립 수)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에 따라 추계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 - (해양수산부) ('26~'28년) 연도별 각 1개 해역(동·남·서)
 - (시·도) ('26) 1개, ('27) 2개, ('28) 2개, ('29) 3개, ('30) 3개
- (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역 면적)
 - (해양수산부) 1개 해역당 약 48,000km² (EEZ 면적 약 144,182km²의 1/3 규모)
 - (시·도) 1개 시·도당 약 8,000km² (영해한계선 내측 수역 약 86,000km²을 11개 시·도로 나눈 평균값)
- (면적당 단가)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에 따라 「해양공간 관리계획 표준품셈」에 기반하여 해양신재생에너지설비 관리계획의 면적당 수립단가를 책정함
 - 이때, 면적당 수립단가 책정에 사용한 「해양공간 관리계획 표준품셈」은 수준별 기술자 투입인원 수와 연동되므로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 적용

3) 법 제7조(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: 해양수산부장관
2. 제1호를 제외한 해양공간: 시·도지사

4) 부산, 인천, 울산, 경기, 강원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

- (요율) 해양수산부의 의견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의 난이도⁵⁾에 따라 면적당 수립단가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
 - (해양수산부) 5% (EEZ는 영해에 비해 지자체간 현안 요소가 적고, 변경이나 관리하는 대상이 적음)
 - (시·도) 12% (영해는 지자체 간 현안요소가 있어 지역협의회 및 일반인에 대한 의견수렴, 합의안 도출 등 관리요율이 높음)

[표 3] 해양신재생에너지설비 관리계획 수립기간, 면적 및 단가 등: 2024년 기준

소관	해양수산부	시·도(11개)	비고
수립 기간	2025~2027년 (3년간)	2025~2029년 (5년간)	
총 면적	약 144,182km ² (EEZ)	약 86,000km ² (영해)	
연간 계획수립 면적	연간 48,000km ²	연간 8,000~ 24,000km ² (1개 시도당 8,000km ²)	• EEZ 전체면적 약 144,182km²을 3개 해역(동, 남, 서)으로 나눠 3개년에 걸쳐 수립 • 영해한계선 내측 수역 약 86,000km²을 전국 11개 시·도의 평균면적 8,000km²으로 산출하고 매년 일정 수의 관리계획 수립 - ('25) 1개소, ('26) 2, ('27) 2, ('28) 3, ('27) 3
계획수립 면적당 단가	1만원/km ²	10만원/km ²	• (해양수산부) EEZ는 영해에 비해 수심이 깊고, 해안선이 없으며, 해양공간특성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의 양이 적어 영해의 1/10 수준인 1만원으로 책정 • (시·도) 해안선이 복잡하고,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자료의 양이 많아 해양공간특성평가,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난이도가 상승하여 10만원으로 책정
요율	5%	12%	• (EEZ) EEZ는 영해에 비해 지자체간 현안 요소가 적고, 변경이나 관리하는 대상이 적음 • (영해) 영해는 지자체 간 현안요소가 있어 지역협의회 및 일반인에 대한 의견수렴, 합의안 도출 등 관리요율이 높음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5)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구상 및 공간설정, 조사 및 분석, 해양공간특성평가, 공간상충분석,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조정, 도면제작 및 자료관리 등 일련의 공종을 거치게 되어 있음

- 추계결과,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해양공간에서 해양 신·재생 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12억 9,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해양신재생에너지설비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해양신재생에너지설비 관리계획 수립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해양수산부	수립면적(A, km ²)	48,000	48,000	48,000	—	—	—
	수립단가(B, 만원/km ²)	1.1	1.1	1.1	—	—	—
	요율(C, %)	5%	5%	5%	—	—	—
	소계 (D=A×B×C, 백만원)	26	26	27	—	—	79
시·도	계획수립 시·도(E, 개소)	1	2	2	3	3	
	1개 시·도당 수립면적 (F, km ² /개소)	8,000	8,000	8,000	8,000	8,000	—
	수립단가(G, 만원/km ²)	10.7	11.0	11.4	11.7	12.1	—
	요율(H, %)	12%	12%	12%	12%	12%	—
	소계 (I=E×F×G×H, 백만원)	102	212	218	338	349	1,219
합계(J=D+I, 백만원)		128	238	246	338	349	1,298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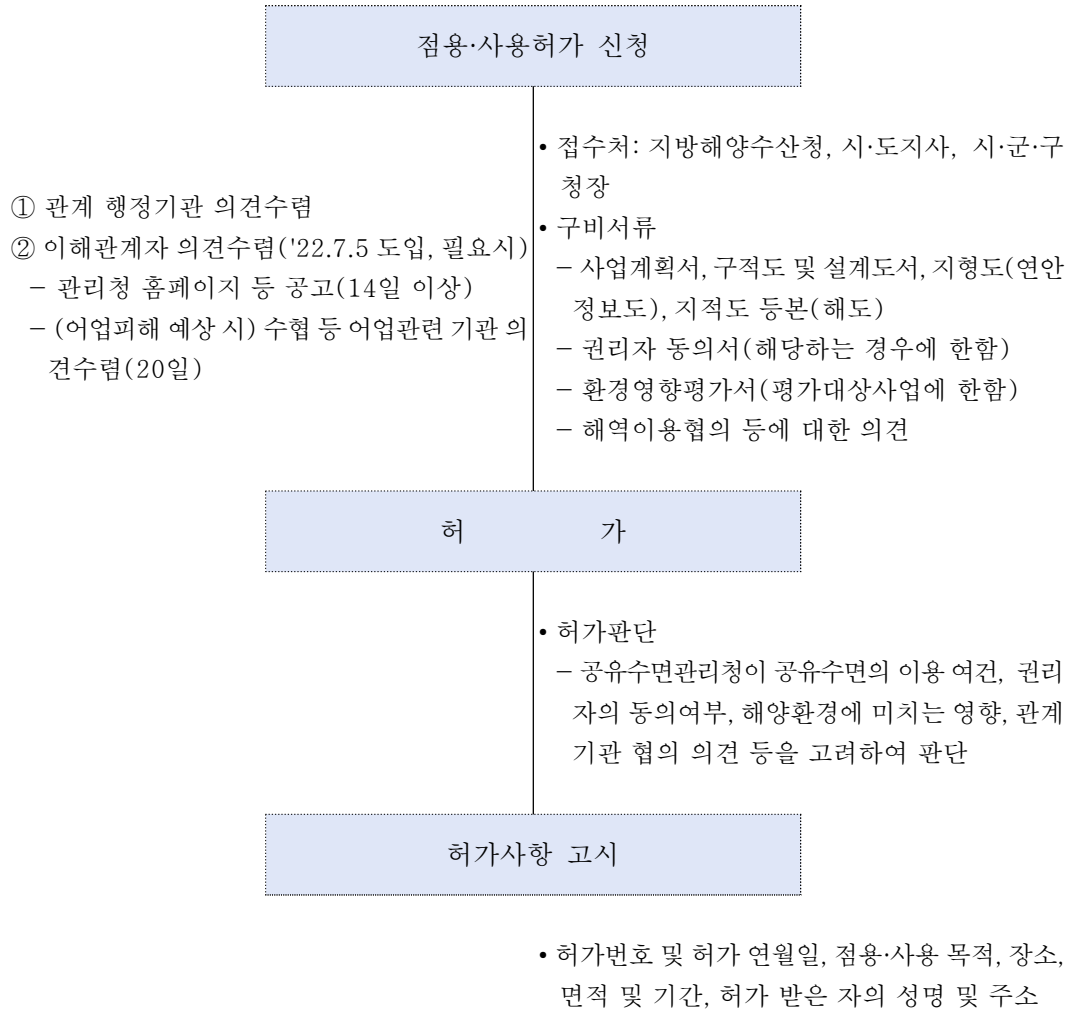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이유미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절차

(해양수산부 제출자료)



[참고자료 2] 공유수면에서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해상풍력 발전단지) 허가 및 설치 현황

(해양수산부 제출자료)

순번	공유수면관리청	허가자	허가일	허가목적	설치여부
1	영광군	신흥풍력주식회사	2018.07.06.	발전단지 건설	설치완료
2	영광군	영광풍력발전(주)	2016.12.23.	"	설치완료
3	영광군	(재)전남테크노파크	2019.03.21.	"	설치완료
4	영광군	낙월블루하트(주)	2021.03.31.	"	미설치
5	영광군	전남개발공사	2023.07.24.	"	미설치
6	신안군	(주)압해풍력발전	2019.09.02.	"	미설치
7	새만금개발청	더지오디(주)	2016.12.12.	"	미설치
8	부안군	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	2016.03.04.	"	설치완료
9	고창군	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	2016.03.04.	"	설치완료
10	고창군	동촌풍력(주)	2022.11.22.	"	미설치
11	제주시	탐라해상풍력발전(주)	2012.12.11.	"	설치완료
12	제주시	제주한림해상풍력(주)	2019.11.27.	"	미설치

주: 2024.7월 기준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